

◇ 특별게재 / 건의서 ◇

酒類에 대한 水質改善 負擔金賦課 反對建議

* 본고는 환경부 공고 제 1996 - 37호('96. 6. 10)로 먹는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전국주류제조업자가 수질개선금 부과 반대 건의서를 작성, 관련부처에 제출한 건의서 전문을 게재한 것임

- 편집자 註 -

■ 目

次 ■

1. 環境部의 立法推進內容

2. 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賦課하는 境遇 蒼起되는 問題點

가. 샘물은 酒類의 主된 原料가 아니며, 地下水를 少量 使用하는 酒類製造業界에 水質改善 負擔金을 賦課하는 것은 不當함.

나. 酒類의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는 酒類價格引上을 불가피하게 하고 國產酒類의 價格競爭力を 低下시켜 國內酒類市場에서 國產酒類의 退潮, 外國產 酒類의 市場掌握을 促進함.

다. 酒類에 대한 二重課稅

라.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正面 背馳

마. 酒類產業에 대한 環境 關聯 負擔體系

바. 二重價格形成으로 價格體系의 混亂招來

3. 結論 및 建議事項

1. 環境部의 立法推進內容

- 물은 人間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資源의 하나이며 또한 產業活動의 根幹이 되는 基礎 原材料입니다. 우리나라 1970年代부터 工業化時代를 맞이하여 產業이 發達되고 生活 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水資源의 利用開發이 더욱 重要하게 認識되었습니다.
이에 政府는 맑은물 供給을 위한 水質管理 一元化 政策에 따라 分散되어 있는 飲用水 關聯規定을 統合하여 飲用水로 인한 國民健康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合理的인 水質management를 위하여 單一法으로 먹는물 관리법을 制定('95.5.1. 施行) 施行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最近 環境部에서는 먹는물 관리법을 改正하여 먹는샘물 제조자 및 輸入販賣業者에게만 賦課 하던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을 샘물을 주된 原料로 한다고 하여 酒類製造者에게도 擴大하고 賦課基準을 製品規格別, 平均販賣價格을 算定, 이 金額에 20% 範圍內에서 賦課할려고 立法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酒類製造者에게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하는 境遇 酒類產業과 國民經濟에 回復할 수 없는 深刻한 問題를 惹起시키므로 全國酒類業團體 및 酒類製造者一同은 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 賦課 反對를 決議하고 效率的이고 建設的인 建議案을 提出하는 바입니다.

2 酒類에 대한 水質改善負擔金 賦課의 境遇 惹起되는 問題点

- 가. 샘물은 酒類의 主된 原料가 아니며, 地下水를 少量 使用하는 酒類業界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하는 것은 不當함.
- 酒類를 製造하기 위하여는 물이 使用되고는 있지만 酒類原料의 費用, 價值面에서 볼 때 물이 酒類의 主된 原料가 아닙니다.
酒稅法 第3條 酒類의 定義에 의하면 烧酎는 澱粉이 含有된 物料, 麴과 물을 原料로 하여 酿酵시켜 連續式蒸溜 外의 方法에 의하여 蒸溜한 것.
또는 酒精을 물로 稀釋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料를 添加한 것이며, 麥酒는 엿기름, 호프 및 물을 原料로 하여 酿酵시켜 濾過, 製成한 것이라고 規程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酒類를 製造하기 위하여는 물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酒類原料의 費用, 價值面에서 볼 때 물이 酒類의 主된 原料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年間 國內 總 用水利用量 213.3億噸中 地下水가 차지하는 比率은 11.1%에 그치고 있으며, 酒造用水은 地下水 利用量의 0.1%에 該當되는 적은 量입니다.
 - 더욱이 위의 地下水利用現況表(表 1參照)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工業用水의 地下水利用量은 全體 地下水利用量의 18.6%를 차지하며, 酒造用水은 工業用 地下水利用量 4.4億噸의 0.7%에 不過합니다.
 - 總 地下水利用量 23.6億噸의 0.1% 程度인 3百萬噸에 不過한 酒造用水(地下水)로 인하여 다른 產業群을 除外한 酒類產業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擴大 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思料되으며 또한, 똑같은 酒種임에도 上水道를 利用하는 製品과 地下水 利用 製品間に 價格 不均衡을 招來할 수가

<表 1>

地下水利用現況

單位 : 億噸

區 分	總用水利用量	地下水利用量	地下水 比率(%)
合 計	213.3	23.6	11.1
構成比	100%	100%	
1. 生 活 用 水	51.6	8.7	17.0
構成比	24.2%	36.9%	
2. 農 業 用 水	141.7	10.5	7.4
構成比	66.4%	44.5%	
3. 工 業 用 水	20.0	4.4	22.0
構成比	9.4%	18.6%	
★ 酒造用水(瓶入用)		0.03	
地下水利用量 對比 構成比		0.1%	

※ 資料 : 韓國水資源公社, 1993

- 酒造用水 : - 酒類製造時 瓶入用으로 使用되는 地下水
- '95年 總出庫量 基準 算定

있어 酒類流通市場에서의 價格體系의 混亂도 招來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酒類의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는 酒類價格引上을 불가피하게하고 國產酒類의 價格競爭力を 低下 시켜 國內酒類市場에서 國產酒類의 退潮, 外國產 酒類의 市場掌握을 促進함.

- 國內酒類產業은 製造原價上昇, 製造者間의 競烈한 競爭, 國產酒類의 消費沈滯 등으로 經營收支가 惡化되어 大部分의 製造業者는 缺損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90年부터 輸入酒類의 全面開放으로 外國產酒類輸入이 急激히 增加하여 國內酒類市場을 계 속 蠶食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 또한 政府는 EU國의 계속되는 協商要求에 따라 위스키 稅率과 關稅率을 계속 引下하여 왔으며, '96年에는 美國, EU國에서 같은 蒸溜酒이면서 燒酎(35%), 위스키(100%) 稅率이 다르다고 같은 稅率을 適用할 것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으며 政府가 協商에 應하지 않을 경우 WTO 提訴를 準備 하고 있습니다.
- 國內酒類業界가 外國의 通商壓力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反對로 外國의 多國籍 酒類流通業 體들은 國內에 支社를 속속 設立하여 破格의인 價格引下와 消費者에 대한 각종 善心攻勢로 國內 市場에서의 掌握을 위하여 手段方法을 총동원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結果로 國內酒類市場은 外國產酒類에 의해 계속해서 蠶食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對內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國產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하는 境遇 酒類價格引上을 불가피하게 하고 限界點에 到達한 國產酒類의 價格競爭力を 低下시켜 國內酒類市場은 外國產酒類가 掌握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國際收支赤字를 累積시킬 것이 明白합니다.

〈参考 1〉

韓國 對 EU 위스키酒稅率 協商 結果

區 分	年度別	自 律 化 內 容
輸入規制 緩和： 對 EC 通商協商 移行	~'91. 6	酒稅率 200%, 關稅率 40% (~'91. 1. 1 : 50%)
	'91. 7	酒稅率 150%, 關稅率 40%
	'93. 1	關稅率 30%
	'94. 1	酒稅率 120%
	'96. 1	酒稅率 100%, 關稅率 20%

※ 參 考

- ▷ '91. 11 韓·EC 實務會談
- ▷ '92. 4. 13 ~ 5. 15 韓·EC 酒稅問題 第 1, 2 次 兩者協議(서울, 브뤼셀)
- ▷ '92. 6. 4, 6. 18 第 113 條 委員會 2 次에 걸쳐 兩者協議 結果 討議
- ▷ '92. 6. 29 韓國은 EC 집행위 協商案에 原則的으로 合意

※ 韓·EC(現在는 EU)間 酒稅兩者協議 合意內容

- 1 段階 : '94 年 위스키酒稅率 引下(150% → 120%)
 - 混合위스키(原液 : 19.9% 以下 包含) 酒稅率 引上(80% → 100%)
 - 燒酎의 教育稅 10% 課稅(酒稅率 3.5% 相當) 新設 - '95. 1. 1 施行
- 2 段階 : '96 年 위스키酒稅率 引下(120% → 100%), 關稅率 引下(30% → 20%)
- ▷ '96 年 EU의 酒稅率 協商 再開 要請 - '96 年中 再開 豫定(財經院)
 - 國內 燒酎 / 위스키間 同一酒稅率 主張
 - 國內 酒稅賦課體系를 從價稅에서 從量稅로 轉換 要求

〈参考 2〉

外國產酒類의 輸入增加趨勢

區 分		'91	'92	'93	'94	'95
外國產 酒 類	輸入額	千\$	69,954	81,838	81,995	136,642
		億원	559	655	656	1,093
		增加指數	100	116.99	117.21	195.33
						302.85

註) 資料 : 關稅廳

다. 酒類에 대한 二重課稅

- 國稅로 納付되는 酒類는 工產品중에서도 公企業 製品인 담배에 이어 私企業 製品으로는 가장 多은 稅金을 納付하고 있는 製品으로서 稅源으로는 酒稅(35~150%)外에도 教育稅(10~30%)가 納付되고 있으며, 이러한 稅金의 負擔은 곧바로 消費者에게 轉嫁되는 間接稅形態를 보이고 있습니다.

<表 2>

酒類의 間接稅率表

單位 : 원, %

區 分	課稅標準	酒 稅	教 育 稅	附 加 税	稅 金 合 計	擔 稅 率 (%)
清 酒	酒類別 공히, 100원으로 假定	70	7	17.7	94.7	49%
麥 酒		150	45	29.5	224.5	69%
燒 酗		35	3.5	13.85	52.35	34%
稀釋式		50	5	15.5	70.5	41%
蒸溜式		100	30	23	153	60%
類似위스키		100	30	23	153	60%
위스키, 브랜디						

※ 擔稅率 : 製品當 消費者 諸稅 負擔率

- 酒類의 課稅標準은 製造場으로 부터 出庫하는 때의 價格으로 酒造原料費 等 製造原價에 一定利潤이 包含된 價格입니다.
 위의 表에서와 같이 酒類에 대한 稅率은 奢侈品, 高價品에 대하여 賦課되는 特別消費稅보다 훨씬 높으며 酒類는 酒稅外에 教育稅까지 賦課되어 酒類의 價格은 課稅標準對比 燒酎 1.5倍에서 麥酒 3.2倍에 水準입니다.
 여기에 水質改善負擔金이 賦課되는 境遇 酒類製造業者는 製造原價로서 물 使用에 따른 高率의 酒稅를 이미 納付하였는데도 不拘하고 다시 水質改善負擔金을 負擔하는 二重課稅를 받게 되고 酒稅, 教育稅, 水質改善負擔金等 過重한 負擔으로 酒類產業은 陶汰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國稅收入에 커다란 部分을 차지해 온 酒類產業에 대해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는 產業의 均衡發展 側面에서도 不合理한 措置라 思料되며 先進外國에서조차 地下水를 利用한다고 하여 酒類나 清涼飲料등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 施行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正面 背馳

- 每年 政府는 安定的 經濟成長을 위해 物價安定策을 強力히 實施하고 있으며, 新政府 出帆 以後 이 같은 努力은 한층 強化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酒類는 生活必需品化 되어 있어 消費者物價政策 決定에 重要한 指標가 되고 있으므로 酒類의 價格引上에 대해 政府는 強力하게 抑制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最近 酒類業界에서는 原資材, 人件費 등의 上昇에도 不拘하고 價格引上要因을 모두 反映하지 못한채, 最大한 自制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 이러한 狀況에서, 水質改善負擔金으로 인한 價格引上은 政府의 物價安定政策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措置이며, 또한 酒類製造社의 原價負擔을 加重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어 結果的으로 消費者들의 負擔만加重되리라 봅니다.

마. 酒類產業에 대한 環境 關聯 負擔體系

- 未來의 產業은 環境產業이 될 것이라는 豫測과 같이 UR妥結에 이어 GR(Green Round)妥結을 위해 世界 先進各國이 推進하고 있습니다.

〈表 6〉

酒類企業의 環境費用 負擔現況

費用項目	內容，包含項目
■公共部門費用 - 各種公課金 - 廢棄物預置金 - 排出賦課金 - 廢棄物回收處理費用 - 污染防止事業費用負擔金	- 주수유수인용세, 河川稅
■民間部門費用 - 環境改善負擔金 - 環境團體 및 社會活動 寄與金 - 地域寄與金	- 環境管理人協會費, 環境保全協會費, 有毒物協會費 - 環境의 날 行事支援金, 河川使用料
■企業自體의 環境事業 - 施設投資費用 - 運營管理費用 - 公正改善費用 - 環境關聯 研究/教育 支援 - 環境關聯 弘報/廣告 費用	- 排出 및 防止施設, 環境污染 測定裝備 - 排出/防止/污染測定裝備 維持管理費, 一般/特定廢棄物 處理費用, 環境人力 雇用費用

註) 資料 : 產業界의 環境費用負擔 適正化 方案 研究('94. 1, 商工會議所)

이에따라 製品生產時에도 汎 地球的인 環境規制가 實施되며 企業의 環境親和 이미지에 따라 企業의 勝敗가 판가름나는 時代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 더우기, 消費者의 環境分野에 대한 至大한 關心으로 이제부터는 環境保全에 소홀히 하는 企業의 製品은 철저히 外面당하며, 企業은 絶對危機를 맞는 環境保護 時代가 이미 開募된 것입니다.
- 따라서, 企業에 대한 環境規制나 費用負擔은 점차 強化되고 있으며, 酒類產業만을 살펴보더라도 現在 負擔하고 있는 각종 環境費用은 해가 다르게 過多해 지고 있는 實情입니다.
-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酒類業體는 環境保全에 대한 費用支出이 상당하며, 環境保全의 意志가 他產業에 비해 남다르다고 自負할 수 있습니다. 水質改善負擔金의 用途는 먹는물의 水質管理 및 地下水資源保護事業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酒類製造業에서 地下水를 少量 使用하였다는 理由만으로 水質改善負擔金을 劃一的으로 賦課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비. 二重價格形成으로 價格體系에 混亂招來

同一한 製品이더라도 地下水使用製品(水質改善負擔金 對象製品)과 上水道를 使用한 製品의 出庫價格

이相異하므로 流通段階別로 消費者의 價格이 달라지게 되어 混亂이招來됨과 아울러 經濟體制의 紊亂을招來할 수도 있습니다.

3. 結論 및 建議事項

- 저희 酒類業界는 地下水의 無分別한 開發 보다는 開發·利用에 따른 環境保全, 管理가 重要하며 이를 통하여 消費者의 健康, 國土의 效率的 管理를 이룩할 수 있다는 環境部의 趣旨에 積極 同參하고 環境保全을 위한 投資, 費用支出에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政府가 地下水의 汚染防止와 環境保全을 위한 基金 마련을 위하여 酒類產業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酒類產業과 國民經濟에 回復할 수 없는 問題를 惹起시키므로 이를 再檢討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地下水資源의 效率的 開發과 保全方向에 대하여 몇가지 建議를 드립니다.

첫째, 地下水의 保全과 效率的管理를 위한 財源은 一般租稅로서 마련하고 政府豫算으로 編成, 집행하여야 합니다.

地下水의 保全과 效率的管理를 위한 財源은 外國에서도 一般租稅로서 마련하고 있으며 독일, 불란서에서는 샘물製造者에 대하여 水質保全을 위한 賦課金을 賦課하고 있으나 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을 賦課하는立法例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水의 保全과 效率的 management를 위해서는 一般租稅로서 財源을 마련하여 政府豫算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合理的이라고 判斷됩니다.

둘째, 水質改善負擔金을 부득이 賦課하는 境遇에는 酒類製品의 平均 販賣價格이 아니라 製品에 들어가는 地下水의 使用量을 基準하여 賦課되어야 합니다.

酒類의 판매價格은 酒類製造原價(材料費, 勞務費, 製造經費), 適正利潤 및 酒稅 등 各種 稅金으로構成되어 있습니다.

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을 酒類의 販賣價格에 賦課하는 境遇 샘물使用과 全然 關係없는 高價의 酒類原料費, 酒稅額 및 利潤에 課稅하게 되어 샘물使用者負擔原則에 違背되고 賦課原則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酒類에 水質改善負擔金을 부득이 賦課하는 境遇에는 酒類製造業者의 地下水使用量에相當하

는 價値를 算定하여 賦課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地下水를 汚染시키는 企業(工業用水), 農企業(農業用水)에 대해서 嚴格한 處罰과 罰課金을 徵收하여 地下水 保全基金으로 使用함이 바람직합니다.

地下水 管理政策에 있어 地下水資源을 汚染시키는 企業은 不利益을 당하고, 반대로 環境保全에 대한 意志가 있는 企業은 惠澤이 있어야 합니다.

地下水 汚染誘發者에 대한 團束을 強化하여 嚴格한 處罰 또는 過重한 罰課金으로 그 負擔을 지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措置이며, 地下水를 利用하되 地下水資源의 枯渴 防止와 環境保全을 위해 努力を 하는 企業에게는 各種 稅制惠澤 등의 裝置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業界 自律的으로 地下水資源의 效率的 管理를 誘導할 수 있는 政策이 樹立될 수 있는 制度의 整備가 必要하다고 思料됩니다.

- 끝. -

1996年 6月 日

A good joke is the one ultimate and sacred thing which cannot be criticised.
Our relations with a good joke are direct and even divine relations.

멋진 농담은 비평을 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신성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멋진 농담과 우리와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신성스럽기조차 하다.

- Gilbert Keith Chesterton -